



**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운영규정**

규정번호	1-0-3
제정일자	2008.03.01
개정일자	2017.03.01
개정번호	Ver.2 총페이지 2

전부개정 2008년 3월 1일  
 일부개정 2013년 6월 1일  
 일부개정 2017년 3월 1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동양학원정관 제39조의 5 규정에 의거 동양미래대학교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교학처장, 산학협력처장,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전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4인의 교수로 구성한다. <개정 2017.03.01.>  
 ②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<개정 2017.03.01.>  
 ③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  
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3조(위원장의 임무)**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  
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4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 
 1. 정년보장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  
 2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
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교원의 심사평정내용과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규정에 의하여 심의하여야 한다.  
 ③ 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는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심사대상교원의 소명권)** 위원회는 심사대상교원이 부적격자로 평정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소명권을 부여하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정족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 
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 ③ 위원 중 자신에 관한 심의 시에는 그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.  
 ④ 제3항에 의한 재적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 수는 그 재적위원수를 감한 수로 한다.  
 ⑤ 위원회는 출석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

**제7조(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)**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관계자의 회의출석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**제8조(기타)**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**(경과조치)** 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 폐기한다.
- ② 종전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- (1) **(시행일)**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